

# “민주주의 축제 선거를 피·눈물로 얼룩지게 했다”

■ 법원, 박주선·유태명 중형 선고 왜?

## 조직적 범죄 상급자에 책임 물어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사건으로 불거진 광주 동구불법선거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화장품 영업사원, 슈퍼마켓 주인, 주부 등 서민은 물론 구의원, 전 민주당 당직자, 동구청 산하기관 간부, 국회의원 보좌관, 현직 구청장과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엄중했다.

구속 12명, 불구속 기소 17명 등 피고인만 무려 29명으로, 선거 관련 최대 규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불법선거운동으로 최종 이익을 보는 박주선 의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경험법칙과 정황사실에 무게=재판부는 불법선거운동의 특성상 상급자는 범행 자체에 대해 모의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 즉 당선을 목표로 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서 볼 때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들이 당내 모임이나 모임으로 불법선거운동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피고인들이 “공천이 곧 당선이다”고 진술한 정

도로 당내 경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며, 결국 박 의원의 당선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봤다. 다시 말해 박 의원이 불법선거운동의 공동정범이며 불법 모임과 경선인 모집과 각 동책 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에 신빙성 뒤=재판부는 증인 또는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꾸준히 위증죄를 언급하며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주요 피고인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는 법정에서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의 불법선거운동 사전 인지 및 알묵적 동의, 지시 등을 사실상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강압이나 희유가 없었으며, 자신의 핵심 측근이나 보좌관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경험법칙과 정황사실, 주요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등으로 판단할 때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 측은 조직을 동원하고 박 의원 측은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유 구청장과 박 의원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고했다는 핵심은 부인 안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 스스로 시의원은 모바일 경선인단 5000명, 구의원은 2000명을 모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구의원인 남모(여·56)씨가 자신의 수첩에 적어둔 것이 결집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재판과 정에서 이 발언을 ‘농담’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구의원이 이를 ‘자시’로 받아들였다고 언급했다.

◇상급자에 무거운 책임=조직적 범죄의 경우 하급자가 직접 실행에 옮기고 상급자는 지시·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따라서 재판부는 선고 후형량을 정하는데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불법선거운동을 실행에 옮긴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은 각각 1년과 2년을 구형하는 등 상급자보다 하급자에 책임을 더 둘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가 피와 눈물로 점철된 비극으로 전락했다”며 “조직적 범죄의 성격상 상급자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나 묵인을 하지만 이익은 상급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상급자를 실행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與野, 박주선 체포동의서 처리 관심

광주지법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광주 동구)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여야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재판부가 요청한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서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앞 다퉈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기존의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회기 동안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6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

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요구된다.

민주통합당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불체포 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되는 것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는 여야의 내놓은 개혁안에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룬다면 여야의 국회 개혁안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국민

의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박주선 의원이 무소속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사법부로부터 체포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처리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당내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도 “당 차원에서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식 논평이나 입장장을 밝힐 수 없다”며 “박 의원이 이번 문제를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민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광주 동구에서는 국

회원 재선과 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재·보궐선거 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대법원 판

결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9일 제 18

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이후에 이뤄질 경우에는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2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

정사실화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자사

직을 사퇴할 경우 전남도지사 보궐선

거도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민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광주 동구에서는 국

회원 재선과 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재·보궐선거 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대법원 판

결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9일 제 18

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이후에 이뤄질 경우에는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2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

정사실화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자사

직을 사퇴할 경우 전남도지사 보궐선

거도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민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광주 동구에서는 국

회원 재선과 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재·보궐선거 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대법원 판

결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9일 제 18

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이후에 이뤄질 경우에는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2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

정사실화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자사

직을 사퇴할 경우 전남도지사 보궐선

거도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민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광주 동구에서는 국

회원 재선과 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재·보궐선거 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대법원 판

결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9일 제 18

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이후에 이뤄질 경우에는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2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

정사실화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자사

직을 사퇴할 경우 전남도지사 보궐선

거도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민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광주 동구에서는 국

회원 재선과 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재·보궐선거 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대법원 판

결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9일 제 18

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이후에 이뤄질 경우에는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2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

정사실화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자사

직을 사퇴할 경우 전남도지사 보궐선

거도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민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광주 동구에서는 국

회원 재선과 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재·보궐선거 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대법원 판

결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9일 제 18

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이후에 이뤄질 경우에는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2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

정사실화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자사

직을 사퇴할 경우 전남도지사 보궐선

거도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민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광주 동구에서는 국

회원 재선과 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재·보궐선거 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대법원 판

결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9일 제 18

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이후에 이뤄질 경우에는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2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

정사실화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자사

직을 사퇴할 경우 전남도지사 보궐선

거도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민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광주 동구에서는 국

회원 재선과 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재·보궐선거 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대법원 판

결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19일 제 18

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이후에 이뤄질 경우에는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2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

정사실화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자사

직을 사퇴할 경우 전남도지사 보궐선

거도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민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광주 동구에서는 국

회원 재선과 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재·보궐선거 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대법원 판